대형비상장주식회사도 소유·경영이 분리되지 않으면 주기적 지정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

- 금융감독원, 2022. 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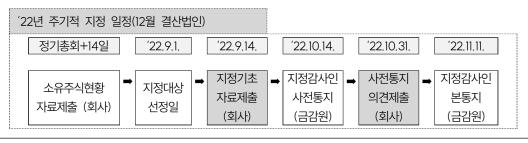
- 금융감독원은 대형비상장주식회사 약 3,435사의 주기적 지정 선정을 위한 소유주식 현황
 자료 제출기한이 도래함에 따라
- 대상 회사가 원활히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, 자료 미제출 등으로 증권발행제한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

1 개요

- □ 대형비상장주식회사*는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에 「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」을 증 선위에 제출해야 하며
 - * '21년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주식회사 약 3,435사 ('20년말 자산총액 기준으로 21년도 재무제표 확정에 따라 변동 가능)
 - 이를 통해 소유·경영 미분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음
 - '20년은 대형비상장주식회사 3,222사 중 28사, '21년은 3,435사 중 54사가 주기적 지 정 대상이 되었으며, 증가하는 추세

주기적 지정제도의 개요

- ◇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(코넥스 제외) 및 소유·경영 미분리* 대형비상장회 사의 다음 3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을 지정
 - *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 50% 이상,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



2022 · 04 · 13 www.eAnSe.com 43

2 주요 내용 및 유의사함

- □ (주요 내용)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소유·경영 분리여부 관련 자료*를 증선위(금감원에 위탁)에 제출해야 함(외부감사법 \$23④)
 - *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(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상 서식)
 - (목적) 주기적 지정 대상인 소유·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에 해당하는지 확인
 - (제출기한) 매 사업연도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
 - (방식) 회사가 직접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(eacrs.fss.or.kr)을 통해 제출

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 제출 개요

- □ (제출인) 회사(♂ 참고 "제출방법 안내")
- □ (제출서류) ① 공문, ② 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, ③ 대표이사 변동현황, ④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, ⑤ 법인등기부등본
- □ (안내자료)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http://fss.or.kr) \Rightarrow [업무자료] \Rightarrow [회계] \Rightarrow [외부감사인 선임] \Rightarrow [외부감사 FAQ] \Rightarrow "대주주 등 소유주식현황 제출 관련 유의사항 안내" 참조
- (위반 시 제재) 자료 미제출 등의 경우 증선위는 증권발행제한, 임원 해임·면직 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(외부감사법 \$ 29①제2호)
- □ (유의사항) 주식소유현황을 제출한 대형비상장주식회사가 소유·경영 미분리 기준*에 해당하면
 - 9.14.까지「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」도 제출**해야 함
 - * 소유·경영 미분리 기준
 - ①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규모가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주식회사 and
 - ②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합산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50% 이상 and
 - ③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
 - ** 매 사업연도 개시 후 9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부터 2주 이내에 감사인 지정기초자료 신고서를 제출, 지정대상 선정일 이전 소유·경영 미분리 상태가 해소된 경우에도 제출필요(12월 결산법인의 경우 9.14.까지)(외부감사규정 §15③)

소유경영 미분리 판단 관련 유의 사항

- □ (지배주주가 개인) 지배주주가 60%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나 회사의 사내이사(대표이사 아님)로 재직 중이면 ⇒ 소유경영 미분리에 해당하지 않음
- ② (지배주주가 법인 ①) 지배주주가 100%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전문경영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면 → 소유경영 미분리에 해당하지 않음
- ③ (지배주주가 법인 ②) 지배주주가 55%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대표이사가 1주 이상 보유하면 ➡ 소유 경영 미분리에 해당함

3 향후 계획

- □ 대형비상장회사가 외부감사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협력하여 유 의사항을 안내
 - 아울러 금감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한 상담/문의*에도 신속히 답변
 - * 홈페이지 문의 :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http://fss.or.kr) ⇒ [업무자료] ⇒ [회계] ⇒ [회계질의] ⇒ "질의회신 및 Q&A신청" 클릭하여 Q&A 통해 질의

전화문의 : (02) 3145-7761/7975

참고 - 제출방법 안내

1 첨부서류

- 1. <u>신고서 제출 공문</u>(당해 회사의 지배주주 등의 <u>소유주식현황</u> 및 직전전사업연도 개시일* 이 후 당해 자료 제출일까지의 대표이사 변동현황 포함)
 - * 12월 결산법인인 경우 2020.1.1
- 2. 위 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50% 이상(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에는 25% 이상)인 경우에 직전전사업연도 개시일 이후의 대표이사 변동현황이 기재된 법인등기부 등본
- 3.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제1항제5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

2 제출 방법

- ①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(http://eacrs.fss.or.kr)에서 발급받은 고유번호 및 공인인증서를 이 용하여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로그인
 - * 고유번호 발급 등 관련 문의 : 국번 없이 1332(이후 ⑤→①→①)
- ② 화면 상단의 '회사·제출서류' 탭을 선택한 후 화면 왼쪽에서 '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 등 제출'을 클릭
- ③ 회사의 상황에 맞게 개황 내용 작성
 - * 항목별 작성방법 :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http://fss.or.kr) → "업무자료" → "회계" → "외부감 사인 선임" → "외부감사 FAQ" → "대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제출 관련 유의사항 안내(2022 년)" 자료를 참고
- ④ 관련 문서 첨부 후 신고서 제출
- ⑤ 제출 후 '접수현황' 탭에서 회사의 문서제출이력 및 세부내용을 확인 가능
 - * 전산보안상의 이유로 제출된 문서의 수정·삭제가 불가능하므로 수정이 필요한 경우 기존과 동일한 절차로 다시 업로드(중복 제출시 최종 보고내용으로 처리)

2022 · 04 · 13 www.eAnSe.com 45